

#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손혜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2.

발의자 : 손혜원 · 권칠승 · 윤소하  
전재수 · 서영교 · 인재근  
김경협 · 박정 · 이석현  
오영훈 · 소병훈 · 강병원  
박남춘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, 관광자원 개발, 관광산업의 연구·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·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
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은 국민관광 홍보, 국민관광 실태조사,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.

이에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장애인,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국민관광 진흥사업</p> <p>    가. ~ 다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3. ~ 6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2조(사업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    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  라. 장애인, 노약자 등 관광     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     원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